

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
신 청 인 (임차인)	성명	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		
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			
신 청 내 용					
관리번호				개찰일자	
최고가 매수신청가격 또는 최고액 입찰가				공매예정가격 또는 매각예정가격	
매각결정기일				우선매수신청가격	
공매보증금				보증금 납부일	
공매재산					
공매보증금 환급용 계좌신고		은행명 (지점)		계좌번호	
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공매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자산관리공사 귀하

첨부서류	1.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2. 임대차계약서 사본 3. 공매보증금 환급용 계좌 사본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우선매수신청가격은 최고가 매수신청가격(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) 또는 최고액 입찰가(최고액 입찰자가 없는 경우 매각예정가격) 금액을 적습니다.
- 공매보증금은 최고가 매수신청가격(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) 또는 최고액 입찰가(최고액 입찰자가 없는 경우 매각예정가격)의 100분의 10 금액을 적습니다.
-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납부해야 우선매수 신청이 완료됩니다.
- 매수대금 납부, 명도책임, 매각재산의 권리이전, 매각결정 취소, 주의사항 등은 공매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